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7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한국투자증권㈜, 삼성증권㈜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 과징금 부과**(한국투자증권㈜ 5억 8,520만원, 삼성증권㈜ 3억 4,600만원)

□ **(수정의결)** 착오매수분에 한하여 매도 주문이 이루어졌고, 기한 내 착오매수에 대한 정정신청이 있어 계약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점, 본 건이 착오매수에 따른 공매도 적발의 첫 사례인 점, 반대매매에 따른 보호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매도 예외에 해당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공매도 규제 위반

○ 한국투자증권㈜는 '25.4.29.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한화오션㈜ 주식 54,044주(45억 5,469만원)를 매도 주문 제출

○ 삼성증권㈜는 '25.4.15.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삼성전자㈜ 주식 33,892주(19억 512만원)를 매도 주문 제출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 제1호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